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 종 환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되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그럼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최근,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규정된바, 이를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에 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- 이에, 개정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

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(안 제15
조제2)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